

제335회 제1차 정례회
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2022. 10. 5(수)

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89
제출일자	2022. 9. 23.
회부일자	2022. 9. 28.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진엽 의원 외 16명

2. 제안이유

가. 2022년 6월 말 기준 도 본청의 총 채무는 1조 7,059억 원이며, 그중 88.6%(1조 5,109억원)를 지역개발채권 매출액(미상환잔액)이 차지하고 있음.

나. 매년 채권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, 이는 차량가액 및 등록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채 발행액이 증가했기 때문임.

다. 자동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공채 매입 적용 요율을 낮춰 도민의 지역개발공채 의무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도 부채를 경감하여 지역 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기준을 당초의 50% 수준으로 감경함.

4. 관련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다. 「지방공기업법」

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예산관련: 별도 조치 필요없음(예산담당관)
- 나. 규제심사: 해당 없음
- 다.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성별영향평가: 해당 없음

7. 검토의견

□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차량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기준을 현행의 50%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, 채권 매입 의무 완화를 통해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채권발행 축소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□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중 제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음

<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(채권의 매출대상 등)>

①채권의 매출은 첨가 매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하며, 구체적인 매출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등록을 신청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

- 금번 조례 개정은 제5조제1항의 별표 중 다음을 개정하는 것임

<매출대상 및 매출기준(제5조제1항* 관련)>

대상별	매출대상	현행 매출기준	개정 매출기준
1. 자동차 신규등록	가. 비사업용 승용자동차		
	1) 1,000cc 이상	취득세과표의 6/100	2/100
	2) 1,600cc 이상	" 8/100	4/100
	3) 2,000cc 이상	" 12/100	8/100
	나. 비사업용 승합,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(배기량 1,000cc 이상)	취득세과표의 3/100	⇒ 1.5/100
2. 자동차 이전등록 (시·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)	가. 비사업용 승용자동차		
	1) 1,000cc 이상	취득세과표의 3/100	1/100
	2) 1,600cc 이상	" 4/100	2/100
	3) 2,000cc 이상	" 6/100	4/100
	나. 비사업용 승합,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(배기량 1,000cc 이상)	취득세과표의 1.5/100	0.8/100

※ 채권발행액 = 차량가액 × 배기량별 요율 * 1,600cc 이상 기준 50% 적용

□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채권발행 증가로 인한 부채 확대 및 차량가액 및 채권 할인을 급증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, 자동차등록 시 매출대상별 매출기준을 현행의 50% 수준으로 낮춤으로써, 채권발행에 따른 경북도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며, 미사용 기금 축소로 효율적 기금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

○ 경북도의 자동차등록 관련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

(단위 : 천 건, 억원, 2021년 12월말)

구분	계		자동차 신규		자동차이전등록		기타허가신고		도급계약체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누계	447	3,208	107	1,862	76	210	2	52	260	1,082

○ 이에 따라 2022년 12월 개정조례안을 시행할 경우, 2021년 자동차등록 관련 발행된 채권 금액의 50%인 1,036억원이 매년 감소되는 효과를 발생함

○ 또한 2022년 12월 개정안 시행시 비용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

(단위: 억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세입	○ 채권매출	△1,036	△1,036	△1,036	△1,036	△1,036	△5,180
	○ 융자금회수 등	-	-	-	-	-	-
	소계(a)	△1,036	△1,036	△1,036	△1,036	△1,036	△5,180
세출	○ 기금용자	△436	△436	△436	△436	△436	△2,180
	○ 예치금 등	△600	△600	△600	△600	△600	△3,000
	소계(b)	△1,036	△1,036	△1,036	△1,036	△1,036	△5,180
□ 총 비용(a-b)		-	-	-	-	-	-

○ 한편, 지역개발기금 미사용 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(예상)
예치금	3,583	3,676	3,443	2,466	2,706	2,649

※ 미사용 기금 예대차의 경우 '22. 1월 현재 채권상환이율 1.05%, 공공예금이자 0.7%로 0.35%의 손실이 발생하게 됨

○ 이와 같이,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축소와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경북도의 채무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, 자동차등록 시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로 그 목적과 개선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